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01일

청구동장 인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사항 직권 조치일자
이 *람	이 *람 1998-03-12	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3길 (신당동)	직권말소 2023-11-01